

**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
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 요구안**

제출자 : 평창군수

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수정 요구

- 관계법령 :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2항, 3항, 4항
- 수정사유 : 다양한 문화 관광단지개발 조성을 위한 사업명 변경 및 사업부지 우선 확보를 위함
- 수정사항 : 사업명 및 사업비, 사업기간, 주요내용 등 사업개요 일부
 - ※ 공유재산 토지, 건물 취득에 따른 면적, 위치 변경사항 없음

기 제출안	수정 요구안
<p>사업명 : 평창 1930 파크 & 스튜디오 조성 부지매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대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글로벌 수준의 문화역량 강화 ○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○ 공동목표 지향을 통한 공동체 의식고취 및 군민의 자긍심확대 <p>□ 사업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대화면 상안미리 1283번지의 48필지(총 49필지) ○ 사 업 량 : 토지면적 54,118㎡, 건물(주택) 3동 280.35㎡ ○ 사 업 비 : 320억원(국비 120, 도비 120, 군비 8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지매입비 21억원(군비), 설계·토목·건축·조경공사 등 299억원 ○ 사업기간 : 2019. 8월 ~ 2024. 12월 ○ 주요내용 : 평창 1930 파크 & 스튜디오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계·토목공사 등(2019~2021년) : 전체 디자인, 실시설계, 토목공사 등 	<p>사업명 : 문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통한 관광자원화 ○ 관광인프라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및 신규 일자리 창출 ○ 공동목표 지향을 통한 공동체 의식고취 및 군민의 자긍심확대 <p>□ 사업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대화면 상안미리 1283번지의 48필지(총 49필지) ○ 사 업 량 : 토지면적 54,118㎡, 건물(주택) 3동 280.35㎡ 매입 ○ 사 업 비 : 2,129백만원(군비) ○ 사업기간 : 2019. 8월 ~ 2020. 12월 ○ 부지 활용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조성(영화/드라마 촬영지 조성 등) - 문화 및 관광/레저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 - 대규모 상설 공연장 조성(영화/연극, 오페라, 락페스티벌 개최 등)

기 제출안	수정 요구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사업(2022년) : 조선총독부 거리, 서울역/남대문 거리, 마포나루 등 - 2차사업(2023년) : 종로 거리, 명동 거리 등 - 3차사업(2024년) : 서대문 거리, 상해 거리 등 <p>□ 추진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채정 투자심사 승인(중앙심사) : 2019년 ○ 매입 부지 검토 : 2019. 7월 ○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: 2019. 8월 <p>□ 검토사항(필요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화면 상안미리 1185-5번지 일원 균유지와 연결한 주변 사유 재산을 매입하여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경성 및 상해 임시정부를 영화/드라마 촬영용 오픈 스튜디오로 만들어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어 타당함. ○ 향후 연결한 군소유 공유재산 부지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예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험형 힐링농업관광시설 조성(농업과 접목한 힐링 관광시설) - 평창 1930 파크 & 스튜디오 조성 등 <p>□ 추진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입 부지 검토 : 2019. 7월 ○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: 2019. 8월 ○ 평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: 2019. 8월 <p>□ 검토사항(필요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화면 상안미리 1185-5번지 일원 균유지와 연결한 주변 사유 재산을 매입하여 문화와 관광, 농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 관광단지로 개발,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○ 향후 연결한 군소유 공유재산 부지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예정

붙임 관계법령 발췌

〈관계법령 발췌〉

□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

제28조(수정·철회)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, 동의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요구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(의사일정 상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기 전에는 발의 의원 및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, 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원 또는 군수에게 문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.

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의 철회통지에 응해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요구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(同意)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그 요구는 수정요구동의안 형식의 의안과 달리 문서로 할 수 있다.